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신분증의 사
본” 첨부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2.나. 및 안 3.
라.)

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예규안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6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나.(4)중 “신분증의 사본”을 “신분증의 사본(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2)의 신분확인서)”으로 한다.

3.라.를 3.마.로 하고, 3.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격자대리인은 확인서면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

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